

어선원 재해공제보험료 지원

<p>목 적</p>	<p>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으로 부상, 질병, 사망 등 각종 재해 시 신속, 공정한 재해보상 실시로 어선원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</p>			
<p>지원내용</p>	<p>○ 자담보험료 중 일부금액을 어선규모(톤급)별로 차등 지원 - (지원비율) 5톤 미만 40%, 5~10톤 미만 30%, 10~30톤 미만 20%, 30~50톤 미만 15%, 50톤 이상 10% - (국비지원) 10톤 미만 70%, 10~30톤미만 60%, 30~50톤 미만 30%, 50~100톤 미만 20%</p>			
<p>지원대상 (사업대상)</p>	<p>○ 도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- 당연가입(3톤 이상) 규모이하 어선 포함 ○ 당해 사업연도 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자(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제외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·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▶ 지자체에서는 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위반내용 통보 (수신자 : 수협중앙회(경남본부), 경상남도 수산자원과) </div>			
<p>신청기간</p>	<p>○ 1~12월</p>			
<p>신청자격</p>	<p>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개인</p>		<p>[<input type="checkbox"/>] 법인, 단체, 기업 등</p>	
<p>신청방법</p>	<p>○ (직접방문) 가까운 수협을 직접 방문하여 공제가입 - 지원대상자가 가입신청한 뒤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완료하면 공제증권 발급</p>			
<p>제출서류 (구비서류)</p>	<p>○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(신청)서 ○ 어선 관련 서류(선박국적증서, 선박검사증서) ○ 어업허가 관련서류(어업허가증 등) ○ 임금 증빙 서류(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,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) ○ 기타 필요한 서류(임대차 관련서류,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)</p>			
<p>문 의 처 (전화문의)</p>	<p>○ 경상남도청 수산자원과 (☎055-211-4056) ○ 수협중앙회 경남본부 (☎055-210-6240)</p>			
<p>도 담당부서</p>	<p>해양수산국</p>	<p>수산정책과</p>	<p>수산지원담당</p>	<p>☎ 055-211-4046</p>